

[아즈텍] 소방계획서

[2023년]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목 차

장	절	목 차 명	페이지
제1장		일반사항	1
	1.0	목적	1
	2.0	적용근거	1
	3.0	적용범위	1
	4.0	문서작성 및 기록유지	1
제2장		예방 및 완화	2
	5.0	일반현황 작성	2
	6.0	자체점검	3
	7.0	업무대행	3
	8.0	일상적 안전관리	4
	9.0	화재예방 및 홍보	4
	10.0	화기취급감독	5
제3장		대 비	6
	11.0	공동 소방안전관리 협의회	6
	12.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7
	13.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12
제4장		대 응	13
	14.0	비상연락	13
	15.0	초기대응	14
	16.0	피난유도	16
제5장		복 구	17
	17.0	화재 피해 복구	17
	부록-1	소방대상물 정보카드	18
	부록-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20
	부록-3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21
	부록-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25
	부록-5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26
	부록-6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의 편성·구성	27
	부록-7	교육·훈련 자체평가 실시 결과 기록부	29
	부록-8	피난안내도	33
	부록-9	피난약자 피난계획	34
	부록-10	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서 및 안전·감독수칙	38

개정이력[소방청]

순번	일자	주요 개정내용	일반계획	부 록
0	15.5.13	■ 소방계획서 제정	-	-
1	17.5.18	■ 화기취급작업 관련 사전승인 및 안전조치 규정 및 서식 신설	10.1 10.2	부록10
2	18.4.1	■ 수동식 분말소화기 제조연도별 설치수량 파악 서식 신설	-	부록3
3	18.4.1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작성 근거 및 서식 신설	5.0	부록2
4	18.4.1	■ 소방안전관리 대리자 지정 근거 및 서식 신설	8.2	-
5	18.4.1	■ 초기대응체계 업무, 교육훈련 및 편성 서식 등 추가	12.0	-
6	18.4.1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기록부 작성 및 서식 신설	13.0	부록6
7	18.4.1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신설	13.0	부록7
8	18.4.1	■ 피난약자 유형추가 (어린이, 임산부)	16.0	-
9	20.4.23	■ 소방차 진입계획(공동주택) 서식추가	-	부록1
10	21.12.29	■ 피난약자 피난계획 서식 추가	-	부록9
11		■ 화재예방방법 제정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등 반영	-	-

개정이력(소방안전관리대상물)

[illegible]

소방계획서 작성안내

1. 서식 작성

이 서식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소방계획서 작성서식(Template)으로 제공 되었다.

2. 작성 요령

작성자는 소방계획의 주요목차, 내용 및 부록에 기초하여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본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계획의 **[굵게 표시된 부분]** 및 부록의 **공란**의 내용을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서식은 대상처의 안전관리 특성 및 운영 환경에 따라 일반계획의 **조문내용** 및 **부록(서식 및 절차서)**을 **선택적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문서 형태**(종이, 전자문서, DB 등) 및 **형식(DOCX,PPTX,PDF)**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다.

3. 작성체계

구 분	구성 체계	
일반 계획	장	제1장 일반사항
	절	1.0 조문명(TAP, 파란색) 1.1 조문내용(TAP, 검은색) [비고 : 관련서식 / 첨부내용]
부록	부록-1 소방대상물 정보카드 부록-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록-3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부록-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부록-5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부록-6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의 편성·구성 부록-7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실시 결과 기록부 부록-8 피난안내도 부록-9 피난약자 피난계획 부록-10 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서 및 안전·감독수칙	

참고1

소방계획서 기본구조

일반계획			부록
구 분	단 계	주요내용	
일반 사항	표지부	0.1 표지 0.2 목차 0.3 개정이력 0.4 작성안내(작성체계)	부록-1 소방대상물 정보카드 부록-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록-3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내용부	1. 목적 2. 적용근거 3. 적용범위 4. 문서작성 및 기록유지	부록-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부록-5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부록-6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의 편성·구성 부록-7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결과 기록부
관리 계획	예방 /안화	5. 일반현황 등의 작성 6. 자체점검 7. 업무대행 8. 일상적 안전관리 9. 화재예방 및 홍보 10. 화기취급감독	부록-8 피난안내도 부록-9 피난약자 피난계획 부록-10 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서 및 안전·감독수칙
	대비	11. 공동 소방안전관리 협의회 12.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13.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대응 계획	대응	14. 비상연락 15. 초기대응 16. 피난유도	
	복구	17. 화재피해 복구	

참고2

작성조문 대비표

소방계획서(시행령 27조)	소방계획서	
	일반계획	부록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반현황	5.0	부록-1
2. 소방 및 방화시설 등 현황 (전기, 가스, 위험물시설 포함)	5.0	부록-3
3.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6.0, 15.0	-
4. 소방/피난·방화시설 점검·정비계획	8.0	부록-5
5. 피난계획(피난약자 피난대책 포함)	16.0	부록-8, 9
6. 방화구획, 제연구획, 마감재료 방염물품, 방화구조/설비 유지·관리계획	5.0	부록-1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안전관리	11.0	-
8.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	13.0	부록-7
9. 자위소방조직 구성 및 임무부여 (피난약자 피난보조 임무 포함)	12.0	부록-6
10.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 사항	10.0	부록-10
11. 소화 및 연소방지 관련사항	10.0, 15.0	부록-6, 10
12.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	5.0	부록-3
13.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	8.0	부록-5
14.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0	부록-6
15. 기타 사항	-	-

참고3

관련 용어 해설

구분	해설	비고(근거)
1.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법 제2조
2. 피난시설	복도, 계단, 출입구 등	건축법 제49조
3. 방화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 제연구획	제연설비 설치장소 중 제연구역으로 구획하는 것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5.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화재예방방법 시행령 제27조
6. 방염물품	방염성능검사물품으로 종류로는 카펫, 커튼, 블라인드, 압막, 무대막, 벽지류, 합판, 목재, 섬유판, 합성수지판, 합성수지 시트, 소파·의자, 기타물품 등이 있다	방염성능기준 제2조, 제3조
7.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8. 방화시설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소방시설법 제16조
9.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10. 특수가연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화재예방방법 제17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법 제24조)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아즈텍] 소방계획서

제1장 일반사항

1.0 목 적

이 계획의 목적은 [아즈텍]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 적용근거

- 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3.0 적용범위

- 3.1 이 계획은 [아즈텍]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상시 거주·근무인 원 및 방문자에 대해 적용한다.
- 3.2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한다.

4.0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 4.1 소방계획의 수립 시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 4.2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대표자/소유자 : 최홍익]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 4.3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등]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장소 : 신관 3층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제2장 예방 및 완화

5.0 일반현황 등의 작성

소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건축물의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사항을 작성·관리하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록1,2,3]

구 분	건축물 일반현황			
명 칭	아즈텍			
도 로 명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안남길150번길72			
연 락 처	☒ 관리주체 ☒ 책임자 최홍익 ☒ 연락처 010-6277-4446			
규 모 / 구 조	☒ 건축면적 1,862.55 m ² ☒ 연면적4,677.3 m ²			
	☒ 층수 지상 3 층 / 지하 1 층 ☒ 높이 13.9 m			
	☒ 구조 일반철골 ☒ 지 붕 기타(판넬)			
	☒ 용도 공장 ☒ 사용승인 2009 . 2 . 18			
계 단	☒ 구 분 ☒ 구역 ☒ 비고			
	피난계단 본관1개 , 신관1개 (제연설비 ☐ 유 ☒ 무) _____(제연설비 ☐ 유 ☐ 무)			
승 강 기	☐ 승용 ____대 ☐ 비상용 ____대			
인 원 현 황	☐ 거주인원 ____명 ☐ 근무인원 ____명			
	☐ 노인 ____명 ☐ 영유아 ____명 ☐ 어린이 ____명			
	☐ 장애인(이동/시각/청각/언어) ____명 ☐ 임산부 ____명			
관 리 현 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성명	성명		
	선임일자	선임일자		
	최홍익	2022.10.11		
	☎ (유선) _____ (휴대전화) 010-6277-4446			
	☒ 대행업체 : 한국원팩(주) ☒ 연락처 : 031-618-6119			
업 무 대 행	☒ 면허번호 : 경기평택 제2009-04호			
	☒ 대행기간 : 2022년 03월 01일 ~ 2023년 02월 28일			
화 재 보 험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6.0 자체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사용승인일 : 2011년 1월 18일]

구 분	점 검 시 기	점 검 방 식
☒ 작동점검	본관 (2023년 2월) 신관 (2023년 5월)	☐ 자체 ☒ 외주
☒ 종합점검	신관(23년 11월)	☐ 자체 ☒ 외주
☒ 외관점검	매월	☐ 자체 ☒ 외주

비고 : 추가적인 정보 또는 이행 시 주의사항 등 작성

7.0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대행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해야 한다. [부록4]

구 분	내 용			
대행업체	업 체 명	한국원팩(주)		
	연 락 처	031-618-6119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계 약 범 위	매월 안전관리 및 연 1회 작동기능점검(본관,신관) 및 종합정밀점검(신관)		
관리감독	감 독 자	최홍익	보유자격	
	감 독 사 항	대행업체 계약이행 여부 감독		

비고.

8.0 일상적 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록5]

8.1 일상적 안전관리계획

구 분	업 무 수 행						
☒ 월	☒ 매월 (일)						
☐ 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기준 : 월 1회 이상 작성

8.2 소방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현황

작성일자	대리자 성명	대리기간	지정사유	확인(관계인)

비고)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과 동시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소지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

9.0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홍보방법	계 획	홍보방법	계 획
☐ 홍보주간(기간) 운영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 포스터, 표어 전시		☐ 현수막, 배너 설치	
☐ 영상물 상영		☒ 모바일 App, SNS 활용	
☐ 체험시설(체험관)견학		☐ 구내 캠페인 방송	
☒ 문서, 이메일 공지		☐ 기타()	

비고.

10.0 화기취급감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자가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부록10]

10.1 화기취급작업 절차

구 분	처리절차	업무내용
사전허가	작업허가	① 작업요청 ② 승인검토 및 허가서 발급
안전조치	화재예방조치	①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② 소방시설 작동 확인 ③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안전교육	④ 화재안전교육 ⑤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
작업 및 감독	화재감시자 입회 및 감독	① 화재감시자 입회 ②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③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④ 작업 종료 확인

* 화재감시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

10.2 화기취급작업 일지

순번	허가일자	허가장소	작업종류	화재감시자

제3장 대 비

11.0 공동 소방안전관리 협의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전반(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심의·조정·의결을 위해 공동 소방안전관리 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운영한다.

11.1 구성현황

[illegible]

비고. 협의회 구성현황 : 협의회장, 위원 명 * 간사 : 소방안전관리자()

11.2 운영환경

[illegible]

비고.

[참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동 소방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 해야한다.

12.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이 계획은 화재 초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위소방활동에 필요한 세부 운영계획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2.1 일반현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운영에 필요한 구성 개요 및 운영현황 등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내 용	
개 요	건 물 명		
	주 소		
	건 축 물	☐ Type-I(특급/1급) ☐ Type-II(1급/2급) * 연면적 30,000㎡ 이상의 경우 TYPE-Ⅰ 적용(공동주택 제외) ☐ Type-III(2급/3급) *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의 경우 TYPE-Ⅱ 적용	
		■ 층수(지하 층/지상 층) ■ 연면적 : ㎡ ■ 용도 :	
		책임인력	■ 대 장 :

12.2 조직 구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 개요, 대원 편성 및 개별 임무현황과 휴일/야간 편성·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부록6]

① 조직개요(Type III)							
편 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명, 부대장 명, 대원 명 ☐ 조직구성 : ☐ 지휘통제팀(명) ☐ 비상연락(명) ☐ 초기소화(명) ☐ 피난유도(명)					
	초기대응체계	☐ 편성인원 : ☐ 조직구성 : ☐ A조(명) ☐ B조(명) ☐ C조(명) ☐ D조(명)					
운영시간		☐ 주간(~ 시) ☐ 야간(~ 시) ☐ 휴일(토/일/공휴일)					
②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부대장(I)							
지휘	지휘통제						
대응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초기대응체계		구 분	A조()	B조()	C조()	D()
			(~ 시)	(~ 시)	(~ 시)	(~ 시)	
운영책임자							
대 원							

12.3 운영계획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응급구조-방호안전-지휘통제를 위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표준운영계획			
① 비상연락				
화재발견/화재접수	■ 화재발생 시 다음과 같이 화재를 발견하고 접수한다. ☐ 발신기(수동) ☐ 감지기(자동) ☐ SP/가스계 설비 음향장치 작동 ☐ 비상전화(수신반 : / 내선) 연락			
화재신고	■ 119화재신고(화재최초 발견자 또는 비상연락팀)			
화재통보	경 보 방 식			
	경 보 수 단			
	자위소방대 소 집			
비상연락	대 장			
	부 대 장 (I)			
	경 비 실			
	소 방 관 서			
	응 급 의 료			
② 지휘통제				
지휘통제/정보수집				
③ 초기소화				

초기소화			
④ 피난유도			
피난개시			
피 난 경 로	제1피난로		
	제2피난로		
	옥 상 피 난	☐ 옥상문 상시개방 ☐ 상시폐쇄(개별시건) ☐ 자동개폐장치 ☐ 헬리포트	
피 난 유 도	피 난 유 도		
	분 산 유 도		
	재 난 약 자		
피 난 보 조			
재 집 결	장 소		
	식 별		
	처 리 차		

12.4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계획은 다음과 같다.[부록7]

구 분	세부추진계획			
교육계획	교육시기			
	교육대상			
	교육방법	1차		
		2차		
훈련계획	훈련종류	참여인력	주요내용	시 기
	기본훈련			
	부분(기능)훈련			
	종합훈련			
	합동훈련			
자체평가 계 획	일 정			
	대 상			
	방 법			
	평 가 자			
	후속조치			

[참고] 교육·훈련의 정의

1. 기본훈련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또는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2. 부분(기능)훈련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상태 및 편성된 팀별 기능에 기초한 임무수행 훈련
3. 종합훈련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기본훈련과 부분(기능)훈련을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 교육·훈련 시간은 1시간 이상을 권장한다.

13.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37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부록7]

[____년 제____차]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명 칭				
일 시 / 장 소	일자 : 년 월 일 / 장소 :			
종 류	대상	☐ 자위소방대 ☐ 재실자, 거주자		
	이론	☐ 강의식 ☐ 세미나		
	실습	☐ 기본훈련	☐ 부분(기능)훈련	☐ 종합훈련
주 관 부 서				
참 여 대 상				
참 여 기 관				
시 나 리 오				
교 보 재				
교 육 계 획				
훈 련 계 획				
평 가 계 획	평가일시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평가방법			

비고.

[참고] 교육·훈련의 정의

1. 기본훈련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또는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2. 부분(기능)훈련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상태 및 편성된 팀별 기능에 기초한 임무수행 훈련
3. 종합훈련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기본훈련과 부분(기능)훈련을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훈련

※ 교육·훈련 시간은 1시간 이상을 권장한다.

제4장 대 응

14.0 비상연락

화재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화재를 경보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14.1 비상연락체계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 일제경보, ☐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방재실(수신반) : 본관1층 현장 , 신관3층 사무실 / 기타 :
화재신고	최초 발견자 또는 비상연락반이 소방서에 신고

비고. 종합방재실(수신반) : 본관 1층 현장, 신관3층 사무실 / 근무시간 :

14.2 비상연락망

구 분	유 선	무 선	기 능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년 월 일 / 담당자 : _____

15.0 초기대응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조치 등 초기대응절차를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15.1 초기대응장비

구 분	종류(형식)	위치(수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 (분말3.3kg)	본관(18개),신관(16개)	
	옥내소화전	전동	
	스프링클러	신관 지하1층	
기타			

비고.

15.2 초기대응절차

구분	대응조치	대응절차
초기 소화	초기소화 : 소화기, 옥내소화전	1. (초기화재) 소화반이 소화기 또는 소화전을 사용하여 전화 시도 2. (화재중기) 신속히 대피
응급 구조	응급구조 : 심폐소생술, 응급치료	1. 응급구조반은 부상자 피난 보조 2. 부상자 이송 후 필요 시 응급치료
방호 안전	화재차단 : 방화문 화원차단 : 가스밸브 차단	1. 피난유도반은 대피 유도 및 방화문 폐쇄 2. 여유가 있을 시 중요물품 운반

비교.

15.3 지하층 차량화재 진압계획(지하주차장이 설치된 대상에 한함)

[illegible]

비고, 추가 장비 비치 현황

- 방연마스크 : 위치 / 개

- 공기호흡기 : 위치 / 개

- 기타() : 위치 / 개

16.0 피난(유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부록8,9]

구분	피난절차 및 방법				
화재경보	☒ 경종(☒ 전층 ☐ 부분층) ☐ 비상방송설비 ☐ 기타()				
피난인원	☐ 상시거주(명) ☐ 상시근무(명) ☐ 유동인원(명)				
	층(구역별)	피난인원	층(구역별)	피난인원	
피난인원	☐ 피난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 노인	☐ 영유아	☐ 어린이	☐ 임산부	장애유형
					☐ 이동 ☐ 시각 ☐ 청각 ☐ 언어 ☐ 인지
* 노인[65세 ↑], 영유아[6세 ↓], 어린이(13세 ↓), 임산부 및 장애인					
피난경로	☒ 제1피난로	본관, 신관 주계단			
	☐ 제2피난로				
	☐ 옥상피난	☐ 옥상출입 [☐ 상시개방 ☐ 상시폐쇄(잠금장치)] ☐ 자동개폐장치(☐ 유 ☐ 무) ☐ 옥상광장(☐ 유 ☐ 무)			
피난보조	피난약자	피난동선		피난방법	
집결지					
비고.					

제5장 복 구

17.0 화재피해의 복구

화재로 인한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17.1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주 요 내 용	
단기복구		
장기복구		
비고		

17.2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illegible]

[부록 1] 소방대상을 정보카드

소방대상물 정보	
명 칭	아즈텍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안남길150번길72

① [건축물 위치현황]



■ 세부현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관할소방서	정남 119 안전센터	
연소 확대 우려구역(건물)	인근 건물	
집결지	건물 앞 공터	
소방차 진입계획	건물 앞 공터	

■ 주차장 현황

층별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주차가능대수	전기차충전소	주차가능대수	전기차충전소

② [소방차 세부 진입계획(공동주택에 한함)]



■ 세부현황

구간	길이(m)×너비(m)	소방차 진입 장애 요소	해소방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표시할 것

③ [용도별 관리현황]

층별	명칭/용도	(바닥)면적	마감 재료	상시인원			관리주체 (입주사)	담당자 연락처
				주간	야간	휴일		
본관1동	공장	2,433.3	불연재				아즈텍	최홍익
신관2동	공장	2,244	불연재					010-6277-4446

[부록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상명 :)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 (선임일자 : 년 월 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급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

[부록 3]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① 소방시설 총괄현황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 ☒ 자동식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화재알림서비스 ☐ 기타
	☒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 누전경보기 ☐ 비상벨설비 ☐ 자동식 사이렌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수신기(모델/제조사) :
	☐ 피난사다리 ☒ 완강기 ☐ 구조대 ☐ 미끄럼틀 ☐ 피난로프 ☐ 공기안전매트 ☐ 간이완강기 ☐ 방열복 ☐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 기타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기타 : 소화용수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연소방지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2 소방시설 세부현황							
구 분		규 격(종류 및 사양)				설치장소	
소 화 기 구		☒ 분말 ☐ CO2 ☐ 할론 ☒ 기타(k급)				전층	
		* 수동식 분말소화기 제조연도별 설치수량					
		년	년	년	년	년	
		☐ 간이소화용구 ☒ 자동식소화기				본관3층	
소 화 설 비	수 원	1차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기타(일반수조) ☐ 겸용(SP/FOAM) * 수량(5.2 m³)			본관3층	
		2차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기타(일반수조) ☐ 겸용(SP/FOAM) * 수량(42 m³)			신관 B1층	
	가 압 송 수 장 치		☒ 펌프방식(☒ 전동기*, ☒ 내연기관) 본관 * H: 46 M / Q: 260lpm , 신관 * H: 52 m / Q 1860lpm			본관3층 신관B1층	
	소 화 전		☒ 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소화전함 __개) ☐ 수동기동방식 ☒ 자동기동 방식 ☐ 설치개수(최소 : 개 , 최대 : 개)			전층	
	스 프 링 클 러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신관 B1층	
			☒ 습식 ☐ 건식 ☐ 준비작동식 ☐ 일제살수식				
	포 (F o a m)		방식	☐ 흡위터스프링클러설비 ☐ 홈헤드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호스릴포설비			
			약제	☐ 단백질 ☐ 합성계면활성제 ☐ 수성막포 ☐ 내알콜을포 * 저장량 : _____L			
	가 스 계		종류	☐ CO2 ☐ 할론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 분말			
			방식	☐ 전역방출 ☐ 국소방출 ☐ 호스릴			
용기			(_____KG - _____L) × __개				
경 보 설 비	자 동 화 재 탐 지 설 비		☒ P형1급(복합형) ☐ R형 ☐ 회로수(회로) ☒ 수신기 위치 : 본관1층 현장, 신관 3층 사무실			본관1층 신관3층	
	누 전 경 보 기		☐ 1급 ☐ 2급				
	가 스누설경보기		☐ 단독형 ☐ 분리형				
	비 상 방 송		☐ 전용 ☐ 업무겸용 *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				
	기 타		☐ 비상벨설비 ☐ 자동식사이렌 ☐ 단독경보형감지기 ☐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구 분		규 격(종류 및 사양)		설치장소
피 난 구 조 설 비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완강기 ☐ 구조대 ☐ 미끄럼틀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피난로프	3층
		인명구조	☐ 방열복 ☐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기타	☐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소 화 용 수 설 비		☐ 흡수식 ☐ 가압식		
소 화 활 동 설 비	제 연 설 비	☐ 거실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승강장) 제연설비* ☐ 송풍구 위치 :		
		* ☐ 부속실 단독 ☐ 계단실/부속실 동시제연 * ☐ 방연풍속 3m/sec~7m/sec ☐ 차압 40Pa 이상 * ☐ 문개방력 110N이하		
	연 결 송 수 관 설	☐ 건식 ☐ 습식 ☐ 겸용설비(SP) ☐ 방수구 위치(☐ 복도통로 ☐ 계단실 ☐ 계단부근) ☐ 방수구 수량 : ___개 ☐ 방수용기구함 수량 : ___개 ☐ 송수구(☐ 단구형 : ___개, ☐ 쌍구형 : ___개)		
		☐ 건식 ☐ 습식 ☐ 방호대상(☐ 지하층, ☐ 판매시설, ☐ 가스시설, ☐ 지하구) ☐ 송수구(☐ 단구형 : ___개, ☐ 쌍구형 : ___개)		
	연 결 살 수 비	☐ 건식 ☐ 습식 ☐ 방호대상(☐ 지하층, ☐ 판매시설, ☐ 가스시설, ☐ 지하구) ☐ 송수구(☐ 단구형 : ___개, ☐ 쌍구형 : ___개)		
		☐ 건식 ☐ 습식 ☐ 전력용 ☐ 통신용 ☐ 공용 ☐ 송수구(☐ 단구형 : ___개, ☐ 쌍구형 : ___개)		
	연 소 방 지 설	☐ 건식 ☐ 습식 ☐ 전력용 ☐ 통신용 ☐ 공용 ☐ 송수구(☐ 단구형 : ___개, ☐ 쌍구형 : ___개)		
		☐ 회로 ☐ 3상교류 200V ☐ 3상교류 380V ☐ 단상교류 100V ☐ 단상교류 220V 용량 ☐ 3KVA 이상 ☐ 1.5KVA 이상 접속기 ☐ 접지형3극플럭스접속기		
	무 선 통 신 보 조 설 비	☐ 전용 ☐ 공용(이동통신겸용) ☐ 누설동축케이블방식 ☐ 공중선방식 ☐ 누설동축케이블과 공중선방식		
		단자 ☐ 보호함(☐ 유, 무) ☐ 위치(정문후문 각 개)		

③ 피난·방화시설 및 방염 현황	
피 난 시 설	☒ 복도 : 중앙복도 * 예 : 중앙복도, 동쪽복도, 서쪽복도, 남쪽복도, 북쪽복도
	☒ 계단 수 : 본관 1개, 신관 1개 ☒ 계단위치 : 중앙계단 ☒ 계단구분 : 피난계단 * 계단구분 예 :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 계단의 이해 - 직통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없음 - 피난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1개 있음 - 특별피난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2개 있음
	☒ 출입구 - 각 층 출입구 수 : 각 동 - 각 층 출입구 위치 : 중앙계단관 인접
방 화 시 설	☒ 방화구획 : 층별 - 방화구획 종류 : 면적별, 층별, 용도별 ☐ 재연구역 장소 :
	☒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 * 내부마감재료 구분 예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타
방 염	☐ 종류 : ☐ 위치 : ☐ 처리 : * 방염필증/성적서 등 :
④ 기타 위험물질 및 시설 현황	
위험물질	☐ 품명 : ☐ 수량 : ☐ 저장위치 : * 지정수량 : 리터, CAS # , UN #
	☐ 화재 시 소화활동 계획 - (소화설비) / - (소화활동요령) * 별첨 : 국가위험물통합검색시스템 위험물질 정보 1부
특수연물	☐ 품명 : ☐ 수량 : ☐ 저장위치 : ☐ 화재 시 소화활동 계획 - (소화설비) / - (소화활동요령)
	☐ 수전용량 KW ☐ 비상발전기 KW ☐ 변압기 ☐ 누전차단기 ☐ 화재 시 비상조치 계획 -
가시시설	☐ 종류 : ☐ 용도 : ☐ 정압실 : ☐ 가스누설경보기 : ☐ 가스누설자동차단기 : ☐ 화재 시 비상조치 계획 -
	☐ 흡연구역 현황 :

[부록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건물명		점검일	년 월 일(요일)
주 소			
점검업체명	건물등급	급	

설비명	점검결과 세부내용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기타	

확 인	관 계 인 : (서명)
점 검 담당자	기 술 등 급 : 담 당 자 : (서명)

비고.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작성사항

-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오 동작)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 방화문은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

[부록 5]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행일자					수행자	(서명)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상호			등급	□특급 □1급 □2급 □3급		
	소재지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m²)	바닥면적(m²)	동수		
항 목	확인내용			확인결과	조치사항		
소방시설				□ 양호 □ 불량			
피난방화시설				□ 양호 □ 불량			
화기취급감독				□ 양호 □ 불량			
기타사항				□ 양호 □ 불량			
불량사항 개선보고	보고일시	보고방법		보고받은 사람			
	· · ·	□대면	□서면 □정보통신				
	조치방법	□이전	□제거 □수리·교체	□기타			

※ 작성요령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
-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
- 경보설비의 수신반,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는 중점확인하여 작성

[부록 6]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의 편성·구성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의 편성·구성(TYPE-II)

① 조직개요(Type II)

편 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명, 부대장 명, 대원 명 □ 조직구성 □ 지휘통제팀(명) □ 비상연락팀(명) □ 초기소화팀(명) □ 피난유도팀(명) □ 응급구조팀(명) □ 방호안전팀(명)
	초기대응체계	□ 편성인원 : 명 □ 조직구성 : □ A조(명) □ B조(명) □ C조(명) □ D조(명)
운영시간		□ 주간편성(~ 시) □ 야간편성(~ 시) □ 휴일(토/일/공휴일)

②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부대장(I)					
부대장(II)					
지 휘	지휘통제				
현 장 대 응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초기대응체계	구 분	A조() (~ 시)	B조() (~ 시)	C조() (~ 시)	D() (~ 시)
	운영책임자				
	대 원				
	(*) 종합방재실, 수신반 근무자로 편성				

비 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년 월 일 / 작성자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의 편성·구성(TYPE-III)

① 조직개요(Type III)

편 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명, 부대장 명, 대원 명 ☐ 조직구성 : ☐ 지휘통제팀(명) ☐ 비상연락팀(명) ☐ 초기소화팀(명) ☐ 피난유도팀(명)
	초기대응체계	☐ 편성인원 : 명 ☐ 조직구성 : ☐ A조(명) ☐ B조(명) ☐ C조(명) ☐ D조(명)
운영시간		☐ 주간(~ 시) ☐ 야간(~ 시) ☐ 휴일(토/일/공휴일)

②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부대장(I)							
지휘	지휘통제						
대응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 각 구역별(층 또는 업종별 대표) 2인 이상을 선정						
초기대응체계	구 분	A조(주간1)	B조(주간2)	C조(야간)	D조(휴일)		
		(06~13시)	(13~20시)	(20~06시)	(09~18시)		
	운영책임자						
	대 원						

비 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년 월 일 / 작성자 :

[부록 가]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실시 결과 기록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근무인원	평일		휴일	
		주간(00:00~00:00)	야간(00:00~00:00)	주간(00:00~00:00)	야간(00:00~00:00)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자위소방대	총원(명)	대장성명	부대장(명)	통보연락(명)	비상연락(명)
		대장연락처	부대장(명)	피난유도(명)	○○(명)
초기대응체계	조직구성				
	총원(명)	○ 건물	○ 건물	○ 층	○ 층

교육·훈련 결과

인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총원(명)	참석	미참석	총원(명)	참석	미참석
일시/장소						
주요내용						
보완사항						
조치사항						

□ 교육·훈련 참석확인

(뒷쪽)

연번	직책	성명	확인	연번	직책	성명	확인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재실자·거주자 대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용도	
	대표자	(서명)			전화번호	
	주소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 주 ☐ 보조		
소방훈련 결과						
일시/장소				☐ 자체훈련	☐ 합동훈련	
참석결과	훈련교관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훈련보조재료						
훈련내용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훈련성과						
문제점						
개선계획						

(뒷쪽)

소방교육 결과				
일시/장소				
참석결과	교육강사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교육내용				
교육성과				
문제점				
개선계획				

훈련·교육 관련사진	
소방훈련	소방훈련
소방교육	소방교육

[부록 8] 피난안내도

[피난안내도 삽입]

[부록 9-1] 피난약자 피난계획(개인별)

피난약자 피난계획						
유형	대상자	근무/거주	피난보호자		피난계획	
			보호자 (보호대행)	연락처	1안)	2안)
노 인						
임 산 부						
어 린 이						
유 아						
장 애	이 동					
	시 각					
	청 각					
	언 어					
유 의 사 항	✓ 피난약자 중 자력대피 불가자에 한하여 작성 ✓ 피난보호자 부재를 대비 보조대행자 지정					

[부록 9-2] 피난계획수립 절차

피난계획 수립절차

피난전략수립	피난약자 파악등	피난경로설정	피난유도	집결지
· 일제피난 · 재배치 · 방호조치	· 피난약자현황 · 피난보호전략수립 · 피난약자 피난계획 수립	· 양방향피난 · 피난안전구역 · 옥상피난	· 사전준비 · 유도방법 · 패닉방지 · 피난유도시 주의사항 · 잔류자 확인	· 집결지 지정 · 집결지 식별·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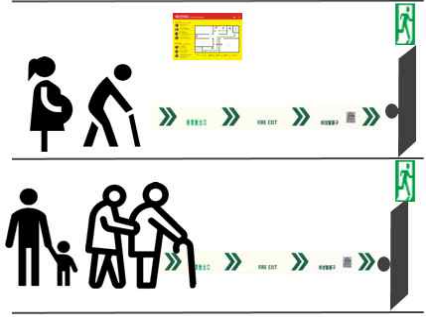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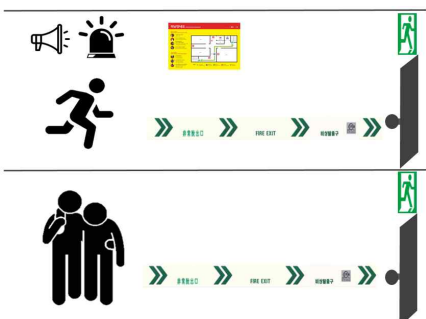
절 차	내 용																											
피난전략수립	✓ 화재상황별 적합한 피난전략 수립 및 결정 (1) 일제피난(Total Evacuation) : 화재 발생 시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 화재경보 → 피난계단 → 집결지(피난층) 피난 (2) 재배치(Relocation) : 일제피난이 곤란한 경우, 수평·수직적 재배치를 통해 화재발생구역으로부터 부분적 피난실시 수평적(층 ↔ 층) or 수직적(하층)재배치를 통한 부분적 피난실시 * 피난안전구역/대피지역 등 이동 후 구조대기 (3) 방호조치(Defend-in-Place) : 피난경로 폐쇄 및 다수의 피난약자 발생 시 현 위치에서 방호조치 및 구조대기 화염으로 인한 피난경로 폐쇄/고립 및 피난약자 * 현 위치 방호조치 후 구조대기/화재위험도(붕괴등)에 따라 피난 전환																											
피난약자 파악 등	✓ 피난약자 유형 및 인원 파악 등 적합한 피난계획 사전 수립 및 훈련 (1) 피난약자 현황 파악 : 대상물 내 유형별 피난약자 현황 사전 조사 <table><tr><td>□노인</td><td>□영유아</td><td>□어린이</td><td>□임산부</td><td colspan="5">장애유형</td></tr><tr><td></td><td></td><td></td><td></td><td>□이동</td><td>□시각</td><td>□청각</td><td>□언어</td><td>□인지</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노인[65 ↑], 영유아[6세 ↓], 어린이(13세 ↓)를 기준으로 피난약자 조사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피난약자 파악 등	(2) 피난보호 전략 수립 : 피난약자 유형별 피난절차 및 방법 결정 <table><tr><td>구 분</td><td>피난절차 및 방법</td></tr><tr><td>자력피난 가능</td><td> ■ 현장의 피난유도원이 신속히 피난을 유도 ■ 건물 외부로 피난 후 지정된 안전장소로 집결 </td></tr><tr><td>자력피난 불가</td><td> ■ 현장의 피난유도원 +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피난 ■ 일시적 위험회피를 위해 수평 → 수직적 재배치 (안전구역으로 이동) 후 추가피난이나 구조요청 ■ 현 위치에서 방호조치 후 구조대기 </td></tr></table> (3) 피난약자 피난계획 수립 : 화재 시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결정하고 피난보호자를 지정	구 분	피난절차 및 방법	자력피난 가능	■ 현장의 피난유도원이 신속히 피난을 유도 ■ 건물 외부로 피난 후 지정된 안전장소로 집결	자력피난 불가	■ 현장의 피난유도원 +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피난 ■ 일시적 위험회피를 위해 수평 → 수직적 재배치 (안전구역으로 이동) 후 추가피난이나 구조요청 ■ 현 위치에서 방호조치 후 구조대기																					
구 분	피난절차 및 방법																											
자력피난 가능	■ 현장의 피난유도원이 신속히 피난을 유도 ■ 건물 외부로 피난 후 지정된 안전장소로 집결																											
자력피난 불가	■ 현장의 피난유도원 +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피난 ■ 일시적 위험회피를 위해 수평 → 수직적 재배치 (안전구역으로 이동) 후 추가피난이나 구조요청 ■ 현 위치에서 방호조치 후 구조대기																											

피난경로 설정	✓ 화재 시 피난경로를 사전에 설정 및 피난훈련 실시 (1) 양방향 피난 설정 : 2개소 이상의 피난로 구성 및 설정 (2)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사전 안내 및 확인 (3) 옥상피난 : 옥상출입문 개방여부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확인
피난유도	✓ 화재 시 신속한 피난유도를 위한 전략적 피난방법 결정 (1) 사전준비 : 화재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피난자의 자력대피여부, 피난보조자 보조 여부 및 기타 피난에 필요한 장치 등 구비 여부 파악 (2) 유도방법 : 화재 시 각 층, 구역별로 양방향 피난유도(제1, 제2 피난로)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피난 시 병목 및 지체현상 발생 방지를 위해 분산 유도 구성 (3) 패닉방지 : 피난 유도 시 패닉현상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4) 피난유도 시 주의사항 : 대상물 용도 및 인원 등에 따라 피난유도 시 주의사항 사전 조사 (5) 잔류자 확인 : 피난유도에 관련된 인력이 최종 피난 시 잔류자 확인 등 피난유도, 구조요청 및 방호조치 수립
집결지	✓ 피난 시 집결 장소 사전 지정 및 식별 조치 (1) 집결지 지정 : 해당 대상물의 인근 안전지역으로 집결지 지정 (2) 집결지 식별 및 확인 : 집결장소 식별 조치 및 피난훈련을 통해 사전 집결장소 확인

[부록 9-3] 피난약자 유형별 지원계획

피난약자 유형별 지원계획					
지원 대상		화재인식	피난준비	피난개시	피난종료
노인·임산부		비상방송 (경종)	· 피난안내도 확인 · 피난보조자 배치 (대상별 1인 이상 배치)	· 자력대피(가능자)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집결지 이동
영유아·어린이		비상방송 (경종)	· 피난유도원 배치 · 피난보조자 배치 (영유아 2인 별 1인 이상 배치)	· 자력대피(피난유도원 안내)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장애인	이동·시각	비상방송 (경종)	· 피난보조자 배치 (대상별 2인 이상 배치) · 피난보조기구 준비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집결지 이동
	청각	피난보조자 배치	· 피난안내도 확인 · 피난보조자 배치	· 자력대피(가능자)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언어	비상방송 (경보)	· 대상별 1인 이상 배치	· 자력대피(가능자)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부록 9-4] 피난약자 유형별 대피요령

피난약자 유형별 대피요령	
대상	관련내용
노인 임산부 어린이	· 자력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피난 안내도 등 확인 후 피난층 이동 ·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보조자(1인 이상)와 동반하여 피난층 이동 
이동·시각	· 피난보조자 2인 이상 동반하여 피난보조기구를 활용하여 피난층 이동 
장애인 청각·언어	· 자력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발생 인지 후 자력으로 피난층 이동 ·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보조자(1인 이상)와 동반하여 피난층 이동 

[부록 10-1]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작업 개요	작업명칭	
	작업기간	년 월 일, 시 ~ 시(시간)
	작업장소	
	작업 책임자	()
작업 계획	작업종류	
	작업절차	
	작업인원	
	사용장비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첨 부	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귀사의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화재감시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업 책임자 : (서 명)

[부록 10-2]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화기취급작업 허가서(전면)		
허가 개요	작업명칭	
	허가기간	년 월 일, 시 ~ 시(시간)
	허가장소	
	작업개요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안전 요구 사항	■ 작업 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M] 표시 [1] 화재예방조치 [2] 안전교육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화재안전교육(작업수칙) ☐ 소화설비(소화, 경보)작동 확인 ☐ 비상 시 행동요령 ☐ 용접·용단 장비/보호구 점검 ☐ 소방시설 사용 교육·훈련 [3] 화재감시자 입회 및 감독 [4] 기타 ☐ 화재감시자 지정 및 입회 ☐ 작업구역설정(출입통제) ☐ 개인보호장구 착용 ☐ 작업구역 통풍 및 환기 ☐ 소화기 및 비상통신장비 비치 ☐ 작업 사전공지(게시, 통보, 방송) ■ 기타 요구사항 _____ _____	
	안전조치 확인	
	작업완료	
	■ 확인일자 : ■ 확 인 자 : (서명)	
	■ 완 료 시 간 : ■ 화재감시자 : (서명)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소방안전관리자 : (서 명)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후면)	
구 분	주요내용
가연물 이동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 이동(제거) * 벽, 파티션, 천장의 반대편에 있는 가연물 이동(제거)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바닥을 깨끗이 청소 ■ 가연성, 인화성물질을 보관하던 배관, 용기, 드럼에 대해 위험물질을 방출하고 폭발 및 화재위험성을 미리 확인 ■ 벽, 파티션, 천장 지붕에 가연성 덮개나 단열재가 없을 것
가연물 보호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등이 어려울 경우 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에 차단막 등 설치 ■ 개구부(벽, 바닥, 덕트)에 대해 불연성 물질로 폐쇄 ■ 가연성 바닥재(종이, 나무, 섬유)의 경우 보호조치 ■ 덕트 및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불티가 비산·점화 가능 시 작업을 정지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차단막 설치 등)
화 기 취 급 수 칩	■ 작업허가서에 따른 허가장소, 시간 및 장비를 사용 ■ 용접·용단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보호장구 착용 ■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 ■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작업 중단 ■ 화재감시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수행 및 안전수칙 준수 ■ 작업현장 내 금연 및 음주 금지(위반 시 작업허가 취소)
화재 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 시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초기 소화 ■ 초기소화 실패 시 화재신고(방재실 보고 포함) 및 경보설비 작동 ■ 발화원(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등) 제거 ■ 화재확산 시 작업자 및 인근 재실자(거주자) 피난유도

[부록 10-3] 화기취급작업현장 안전수칙

화기취급작업현장 안전수칙	
순 번	안전수칙
❶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자 입회 및 감독 하에 작업
❷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모든 가연물 을 이동
❸	가연물 이동 불가 시 적절한 보호조치 (차단막 등 설치)
❹	작업장 내부·바닥을 깨끗이 청소 하고 정리정돈 유지
❺	화기취급작업 시 반드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❻	화기취급 시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 되지 않도록 주의
❼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경우, 즉시 작업 중단
❽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 (소화기) 및 경보설비 (비상벨) 작동
❾	작업장 내 절대 금연 (라이터 반입금지) 및 음주행위 금지
❿	기타 사항은 화재감시자의 지시 에 따라 작업

비상연락처 : 화재신고 119, 방재실 : -

[회사 로고 및 명칭]

[부록 10-4] 화재감시자 감독수칙

화재감시자 감독수칙	
구 분	주요내용
사전 확인	■ 화기취급작업 사전 허가서 발급 여부 ■ 작업허가서의 안전조치 요구사항 이행 여부 ■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 이동(제거)가 불가능한 가연물의 경우 차단막 등 설치 확인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 비상연락체계 확인(방재실, 현장 작업책임자 등) ■ 용접·용단장비 및 개인보호구 상태 점검 ■ 작업현장의 출입제한구역 설정 및 차량 통제 등(필요 시) ■ 작업계획을 사전에 공지(통보, 방송 등) ■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현장 감독	■ 통신장비(무전기, 휴대전화) 및 소화기를 갖추고 감독 ■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하며 다른 업무 수행 금지 ■ 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한 사용여부 확인 ■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 작업 시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 ■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최종 확인	■ 작업종료 후 30분까지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 CCTV 등으로 현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인정 ■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